

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안
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「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문화시설 개선비용의 지원 절차) ① 「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라 문화시설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1. 개선 대상 문화시설 현황
2. 개선계획서
3. 예산서

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개선계획서 내용의 타당성, 경비 산정의 적정 여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을 고려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, 그 결과를 별지 제2호 문화시설 개선비용 지원 승인(불승인) 통지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③ 제2조제2항에 따라 승인통보를 받은 신청인은 승인통보를 받은 날부터 제2조제1항의 개선계획서상 개선 계획기간 내에 개선을 완료하

고 별지 제3호 서식의 문화시설 개선 완료 신고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3조(전담기관의 지정 절차)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(이하 "전담기관"이라 한다)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·법인 또는 단체는 영 제7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의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1. 정관(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) 1부
2. 사업계획서 1부
3. 영 제7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

② 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서를 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(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)를 확인하여야 한다.

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영 제7조제3항에 따라 발급하여야 하는 전담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.

부 칙

이 규칙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.

문화시설 개선비용 지원신청서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 60일
신청인	기관명	고유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
	대표자 성명	전화번호

사무소 소재지

「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2조,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문화시설 개선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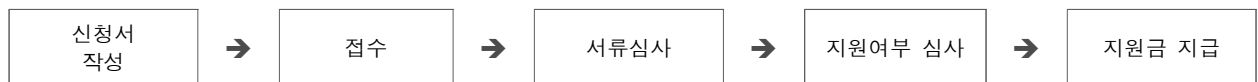
(서명 또는 인)

문화체육관광부장관·특별시장·광역시장·
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·
시장·군수·구청장

귀하

신청인 제출서류	1. 개선 예정 문화시설 현황 2. 개선계획서 및 예산서	수수료 없음
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

처리절차



신청인

처리기관:

210mm×297mm[백상지(80g/㎡) 또는 중질지(80g/㎡)]

문화시설 개선비용 지원대상자

☐ 승 인
☐ 불승인

통지서

신청인	상호 또는 명칭		대표자	
	고유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			
	소재지			
결정내용		☐ 승 인 ☐ 불 승 인 (불승인 사유:)		

문화체육관광부장관·특별시장·
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
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

※ 승인일부터 계획기간 이내에 개선을 완료하고 개선완료 신고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
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업무
전담기관 지정 신청서

※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시	처리기간	30일
신청인	기관명	사업자등록번호(고유번호)	
	대표자 성명	전화번호	
	설립 연월일		
	사무소 소재지	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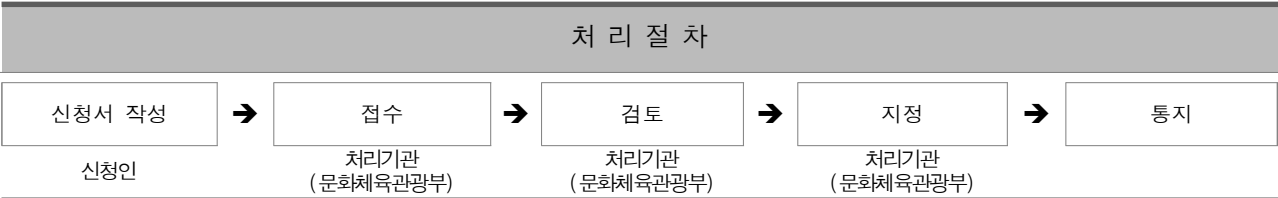
「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4조제1항,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업무 전담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

신청인 제출서류	1. 정관(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) 1부 2. 사업계획서 1부 3. 「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7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	수수료 없음
담당 공무원 확인사항	법인 등기사항증명서(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)	



210mm×297mm[백상지(80g/㎡) 또는 중질지(80g/㎡)]

제 호

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업무 전담기관 지정서

1. 기관명:
2. 사업자등록번호(고유번호):
3. 성 명(대표자): (전화번호:)
4. 사무소 소재지:

「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4조제1항,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업무 전담기관으로 지정합니다.

년 월 일

문화체육관광부장관

직인